

심의결과 위안대로가결

의안번호	회의차수	회의일자	제 의 자
36	18	1984. 8. 16	홍재 최상익

의안 : 「금융기관의 예금지급준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의결사항 : 「금융기관의 예금지급준비에 관한 규정」을 발의하고
 같은 날 일부 개정한다.

제외관계
법규조항 : 한국은행법 제 57조 및 제 59조

제외척지 : 최근의 통화공급 경로가 금융기관의 테민간 여신 중심
 으로 전환되고 있음에 비추어 금융기관의 자체 신용
 창조 능력을 확대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수익 기반 확충
 을 도모하고 책임 경영체제의 조기 정착에 도움이 되게
 하고 차 본권 전기와 같이 의결할 것을 제의함.

참고 사항 1. 제외관계 법규조항

가. 한국은행법 제 57조

- ① 금융통화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이 보유하여야
할 예금지급준비금의 최저율을 정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예금 지급 준비금의율은 제 58조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00분의 50이하로 하며 모든 금융기관에 일률적으로 적용한다.

나. 한국은행법 제 59조

금융통화위원회는 제 57조, 제 58조의 범위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요구불예금과 기한부예금 또는 기타 금융통화위원회에 의한 종류별 은행예금에 대한 개별적 최저 예금 지급 준비율의 결정
2. 최저예금 지급 준비금의 100분의 25까지 한국은행 권으로써 보유하는 것의 허용

붙임 : 「금융기관의 예금 지급 준비에 관한 규정」 개정 (안)

(참 고)

- 가. 저축을 인하여 따른 은행별 저축액 평균 및 수지개선 규모
- 나. 금융기관 예금 지급 준비상황 (84.5/ 하반월)
- 다. 예금 지급 준비율 변천 추이
- 라. 주요국의 지급 준비율 현황

(붙임)

「금융기관의 예금지급 준비에 관한 규정」 개정 (안)

현행	개정 (안)												
제 1 조 (생략)	제 1 조 (현행과 같음)												
제 2 조 (예금 지급 준비금의 최저율) ① 한국은행법 제 57 조 및 제 59 조에 의하여 각 금융기관이 보유하여야 할 예금 지급 준비금의 최저율은 다음과 같다.	제 2 조 (예금 지급 준비금의 최저율) ① 한국은행법 제 57 조 및 제 59 조에 의하여 각 금융기관이 보유하여야 할 예금 지급 준비금의 최저율은 다음과 같다.												
<table><tr><th>예금종별</th><th>지급준비율</th></tr><tr><td>저축성 예금</td><td>5.5 %</td></tr><tr><td>요구불 예금</td><td>5.5 %</td></tr></table>	예금종별	지급준비율	저축성 예금	5.5 %	요구불 예금	5.5 %	<table><tr><th>예금종별</th><th>지급준비율</th></tr><tr><td>저축성 예금</td><td>4.5 %</td></tr><tr><td>요구불 예금</td><td>4.5 %</td></tr></table>	예금종별	지급준비율	저축성 예금	4.5 %	요구불 예금	4.5 %
예금종별	지급준비율												
저축성 예금	5.5 %												
요구불 예금	5.5 %												
예금종별	지급준비율												
저축성 예금	4.5 %												
요구불 예금	4.5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 3 조 - 제 6 조 (생략)	제 3 조 - 제 6 조 (현행과 같음)												
(신설)	부 칙 이 규정은 1984. 9. 8 (9월 상반월) 요지존 적립식 부터 시행한다.												

(참고)

가. 지존을 인하여 따른 은행별 요지존액 경감 및 수치개선 규모

(단위: 억원)

	84.7/하반월 ^B 요지존 (A)	인하후요지존 (B)	인하에 따른 요지존액경감 (A - B)	년간수치개선 ¹⁾ (A-B) × 0.08
조흥	1,047	857	190	15.2
상업	1,169	956	213	17.0
제일	1,182	967	215	17.2
한일	1,166	954	212	17.0
서울신학	764	625	139	11.1
신한	186	152	34	2.7
한미	49	40	9	0.7
외환	562	460	102	8.2
소계	6,125	5,011	1,114	89.1
특수은	3,841	3,143	698	55.8
지방은	1,255	1,027	228	18.2
외국은	155	127	28	2.2
합계	11,376	9,308	2,068	165.3

1) 요지존액 경감분으로 통화안정계정 예치 또는 B자금 상환함을
전제

나. 금융 기관 예금 지급 준비 상황 (84. 5/ 하반기)

(단위: 억원)

	지존 대상 예금 (A)	요 지 준 (B)		실 제 지 준 (C)		과부족 (C - B)
		금 액	(B/A, %)	금 액	(C/A, %)	
조 흥	19,578	1,032	5.3	1,033	5.3	1
상 업	21,225	1,134	5.3	1,136	5.4	2
제 일	21,016	1,122	5.3	1,122	5.3	-
한 일	21,492	1,141	5.3	1,144	5.3	3
서울 신학	14,157	761	5.4	764	5.4	3
신 한	3,282	181	5.5	181	5.5	-
한 미	833	46	5.5	46	5.5	-
외 환	10,819	569	5.3	569	5.3	-
소 계	112,402	5,986	5.3	5,995	5.3	9
특 수 은	76,431	3,808	5.0	3,873	5.1	65
지 방 은	22,247	1,224	5.5	1,227	5.5	3
외 국 은	2,818	155	5.5	161	5.7	6
합 계	213,898	11,173	5.2	11,256	5.3	83

1085

다. 예금 지급 준비율 변천 추이

(단위: %)

년 월 일	지 준 율		지속 기간
	저축성 예금	요구불 예금	
1968. 1. 1	18	32	8개월반
9. 16	18 (15)	32 (25)	3 "
1971. 1. 1	16 (13)	26 (20)	11개월
11. 1	12 (10)	18 (15)	13개월반
1972. 12. 16	14 (12)	19 (16)	5개월
1973. 5. 16	18 (16)	22 (19)	14개월
1974. 8. 1	15 (13)	19 (16)	5개월반
1975. 1. 1	17 (15)	21 (18)	2개월
3. 1	16 (14)	23 (20)	4개월
7. 1	17 (15)	24 (21)	9개월반
1976. 4. 16	17 (12)	24 (17)	20개월반
1978. 1. 1	17 (12) < 12 >	24 (17) < 17 >	2개월
2. 23	18 (14) < 13 >	25 (19) < 18 >	1 "
3. 23	19 (16) < 14 >	26 (21) < 19 >	1 "
4. 23	20 (17) < 15 >	27 (22) < 20 >	20 "
1980. 1. 8	11 (8) < 6 >	20 (15) < 13 >	8 "
9. 23	10 (7) < 5 >	14 (10) < 8 >	9 "
1981. 7. 1	5.5	5.5	9 "
11. 16	3.5	3.5	5 "
1982. 5. 23	5.5	5.5	-

주 : () 내는 농협, < > 내는 수협

1086

라. 주요국의 지급준비율 현황

(단위 : %)

	요구불 예금	저축성 예금
미 국	3 - 12	0 - 3
서 독	6.4 - 10.15	4.2 - 7.15
일 본	0.25 - 2.5	0.125 - 1.625
대 만	10 - 15	5 - 7

1057

심의결과 원안대로가결

의안번호	회의차수	회의일자	추천자
37	18	84.8.16	은행감독원장 송병순

의안 : 홍콩·상하이은행 (The Hongkong & Shanghai Banking Corporation) 서울지점 신설 내인가

의결사항 :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신설을 다음과 같이 내인가 한다.

은행및점포명	신설예정지	업무종목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The Hongkong & Shanghai Banking Corporation, Seoul Branch)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4가 45번지 (상의회관)	은행법에 의한 일반은행 업무. 다만, 외국환은행업 무는 외국환 관리법에 의거 별도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요함.

추천관계법규조항 : 1. 은행법 제 9 조

2. 인가업무 취급규정 제 2 조

1088